

대전지방법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25카합50316 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우진, 김희중, 이종문, 이한슬
채권자 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창영, 이숙미, 김효전
채무자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채무자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전세영, 양주형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 C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 7. 25.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 9. 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 2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전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D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 7. 25.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2025. 9. 26. 10: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전에 관하여,

가. 별지 2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 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D'라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는 이른바 'E그룹'의 회장으로, 채무자 C의 기타비상무이사이자, 발행주식의 1.11%(총 29,415,558주 중 326,46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채권자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채무자 C의 대표이사이자 채무자 C 발행주식의 7.78%(총 29,415,558주 중 2,288,8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F은 채무자 D의 대표이사이자 채무자 D의 발행주식의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F과 참가인은 채권자의 자녀들이다.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44.63%(총 29,415,558주 중 13,129,267주)를 보유한 지주회사인 채무자 D가 대전지방법원 2025비합50014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회의사항(이하 '이 사건 안전'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25. 7. 25.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함에 따라, 채무자 C는 2025. 9. 26. 10: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무자 C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의 '신규 이사의 선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

면,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된다. 이 사건 정관 규정의 적대적 인수는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권 인수를 의미하고, 채무자 C의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정한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방법이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위배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가처분으로 그 결의금지나 장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특히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정관 규정의 효력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보다도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이른바 '초다수결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 D는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상법상 특별결의를 넘어서 더욱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동일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식회사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상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할 뿐, 그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보통결의 요건이 적용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결의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의방법을 위 상법 규정과 다르게 정한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나 상법 제434조 등의 각종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및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방법에 의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 제1항의 규정 등은 모두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최소결의요건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결의요건의 상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것보다 가중된 결의방법을 정하는 것이 위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관은 주식회사의 자치규범으로서 회사의 특성이나 경제적 사정 등 외부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대적 기업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주주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를 쉽게 지배할 수 없도록 정관 조항을 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조항을 둔 주주들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정관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정하여 두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나, 이미 적지 않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이 사건 정관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관 조항이 실제로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에 관하여 경영권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의 엄격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적 자치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수주주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을 해할 추상적인 우려

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 C 정관 제31조는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한 기존 이사의 해임이나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위 각 사항에 관한 정관 개정 시 그 결의요건을 상법이 정한 특별결의요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가중하였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C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안건이 이 사건 정관 규정이 정한 '적대적 인수로 인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안건은 기존 참가인 및 채권자 측 이사 3인(채권자, 참가인, G), F 측 이사 3인(H, I, J),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채무자 C의 이사회에 채무자 D(또는 F) 측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F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안건'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안건은 적대적 경영권 인수로 인하여 신규이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D가 지주회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안건의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채무자 C의 신규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두고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정한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인수' 또는 '합병'의 통상적인 의미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정관 규정의 내용과 도입취지, 특히 채무자 D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서<각주1> 자회사인 채무자 C의 주식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관 규정은 지주회사 외의 사람이 지주회사 및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 C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이사회 구성에 변동을 시도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보인다.

② 채무자 C의 경영권 행사의 주체에 관하여는, 채무자 D가 채무자 C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로서 채무자 C의 이사 선임, 즉 이사회(경영진) 구성에 관여하고 있고, 채무자 C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 C의 사내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안건은 채무자 D가 채무자 C에 대하여 최대주주 겸 지주회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③ 채권자는 이 사건 안건에 따른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권 인수라고 주장하나, 적대적 인수 합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면이나 효과의 하나로 신규 이사의 선임(또는 기존 이사의 해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신규 이사의 선임 그 자체가 경영권 인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채권자는 이 사건 안건이 채무자 C의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므로 '적대적'인 경영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기타비상무이사인 채권자와 대표이사인 참가인 등 경영진 중 일부 이사가 반대하는 것 외에는 채무자 C 이사회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C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안건을 반대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채권자의 주장이 채무자 C의 경영권이 현재 대표이사인 참가인 개인에게 있고, 지주회사이자 최대주주인 채무자 D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채무자 C의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기존 이사 해임 등을 하는 것이 곧 적대적 경영권 인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관 규정을 포함한 정관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채무자 D는 채무자 C의 지주회사이자 최대주주임에도 참가인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 감사 선임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주주의 찬성을 얻어야만 하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⑥ 비록 채권자, F, 참가인 사이에 2018. 9. 1.경 채무자 C의 사업경영권(채무자 C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에 관하여 합의하기는 하였으나(소갑 제5호증 참조), 이는 위 3자간 합의에 불과하여 그 합의가 곧바로 채무자들을 구속한다고 볼 수도 없고, 채무자 C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5. 9. 19.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별 지

[별지 1]

목 록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F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K 선임의 건

끝.

[별지 2]

채무자 C 주식회사의 정관 제31조

제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2.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3. 본 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 끝.

각주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설립목적이나 기능이 있고(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등 참조),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통하여 이와 같이 회사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